

##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5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

#### 가.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

| 직군         | 직렬·직류(분야) |            | 직급 | 채용인원       | 학력 및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|--|
| <b>총 계</b>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<b>375</b> |  |  |
| 행정         | 속기        | 속기         | 9급 | 1          | 한글속기 3급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수의        | 수의         | 7급 | 1          | 수의사  |  |
| 기술         | 해양수산      | 선박항해       | 9급 | 1          | 조선 산업기사 이상<br>항로표지 산업기사 이상<br>항해사 1급 내지 6급 |  |
|            | 의료기술      | 의료기술(임상병리) | 9급 | 11         | 임상병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          | 의료기술(방사선)  | 9급 | 5          | 방사선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          | 의료기술(물리치료) | 9급 | 4          | 물리치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| 약무        | 약무         | 7급 | 3          | 약사   |  |
|            | 간호        | 간호         | 8급 | 96         | 간호사  |  |
|            | 시설        | 지적         |    | 9급         | 27   | 지적 산업기사 이상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| 지적(장애인)    |    | 9급         | 1  |  |
|            | 운전        | 운전         | 9급 | 168        | ‘제1종 대형 운전면허’ 취득 후<br>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 |  |
|            | 공업        | 일반기계(고졸자)  |    | 9급         | 7  |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의<br>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<br>추천을 받은 자<br>※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(2001년 1~2월 출생)<br>해당자도 응시가능 |
|            |           | 일반전기(고졸자)  |    | 9급         | 13   |  |
|            |           | 일반화공(고졸자)  |    | 9급         | 2  |  |
| 녹지         | 조경(고졸자)   |            | 9급 | 2          |  |  |
| 보건         | 보건(고졸자)   |            | 9급 | 2          |  |  |
| 시설         | 일반토목(고졸자) |            | 9급 | 15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| 건축(고졸자)   |            | 9급 | 12         |  |  |
| 방송통신       | 통신기술(고졸자) |            | 9급 | 4          |  |  |

## 나. 공통응시자격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거주지 제한 없음)
- 응시연령
  - 7급 : 20세 이상(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  - 8·9급: 18세 이상(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    - ※ ‘기술계 고졸(예정)자 경력경쟁 임용시험’ 응시자의 경우,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(2001년 1~2월생)도 응시 가능
- 응시결격사유 등(적용기준일 :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### 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▶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### ▶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

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-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·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·면허증·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자격증·면허증·학위의 취득, 경력기간의 충족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

**다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**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-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

## 라.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
### < 학교장 추천 기준 >

※ '기술계 고졸(예정)자 구분모집' 응시자만 해당함

◆ 소속 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 1인 1직류만 추천 ◆

#### ○ 선발예정 직렬(직류)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(예정)자

- [붙임 6] 의 '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'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,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[붙임 7] 의 '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49호)의 [별표 2] '직무분야별 학과'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,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

#### ○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, 그 중 50%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,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%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.5 이내인 자

- (졸업자) 고등학교 수학년 성적 기준

- (졸업예정자) 고등학교 1~2학년까지 수학년 성적기준

※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 
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

(인문계고 성적증명서 및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)

※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래기준 적용

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·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 학과의 상위 50% 이내인 졸업(예정)자

#### ○ 고졸자의 개념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

- 대학(전문대 포함),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 등의 재학·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불가. 다만,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(2018. 1. 1.현재)는 포함.

※ 1.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
2.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
3.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·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

## 마. 운전직렬 응시대상자

- ‘제1종 대형 운전면허’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(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)
- 대형버스 규격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1]에 제시된 ‘대형 승합자동차’ 기준에 따르며,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함
- 군(軍)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,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-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### <제출서류> 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

-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
-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(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
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<http://www.nhis.or.kr> 에서 발급 가능,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

### ※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(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재안내 예정)

-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[붙임 2] 서식으로 제출할 것  
(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[붙임 2]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)
- ‘서류전형 심사위원회’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,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- 서류전형 심사 결과 불합격자는 면접시험 응시자격이 없음

## 2

## 시험과목

※ 노란색 음영 표시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으로 문제를 공개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직렬·직류(분야)              |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 험 과 목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행정                   | 속 기                 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2) : 사회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술                   | 수 의                    | 7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2) : 수의미생물학, 수의보건학<br>선택(1) : 수의전염병학, 수의병리학, 수의약리학 |
|                      | 선 박 향 해             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물리, 선박일반, 항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의 료 기 술<br>( 임 상 병 리 )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의 료 기 술<br>( 방 사 선 )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의 료 기 술<br>( 물 리 치 료 )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약 무                    | 7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2) : 화학개론, 약제학<br>선택(1) : 약전학, 약물학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간 호                    | 8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생물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지 적<br>( 장 애 인 포 함 )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수학, 지적측량, 지적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운 전                 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2) : 사회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일 반 기 계<br>( 고 졸 자 )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물리, 기계일반, 기계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일 반 전 기<br>( 고 졸 자 )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물리, 전기이론, 전기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일 반 화 공<br>( 고 졸 자 )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화학, 유기공업화학, 무기공업화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조 경<br>( 고 졸 자 )    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조경학, 조경계획 및 설계, 조경재료(식물 포함) 및 시공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보 건<br>( 고 졸 자 )    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생물, 환경보건, 공중보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일 반 토 목<br>( 고 졸 자 )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물리, 응용역학개론, 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건 축<br>( 고 졸 자 )       |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물리, 건축계획, 건축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 신 기 술<br>( 고 졸 자 ) | 9급                     | 필수(3) : 물리, 전자공학개론, 유선공학개론 |   |

※ 2018년도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며,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경력경쟁 임용 시험은 아래와 같이 시험문제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실시함

-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: 10개 과목(문제 공개,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)  
: 물리, 기계일반, 기계설계, 전기이론, 전기기기, 생물, 응용역학개론, 측량, 건축계획, 건축구조
-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: 10개 과목(문제 비공개,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)  
: 화학, 유기공업화학, 무기공업화학, 조경학, 조경계획 및 설계, 조경재료(식물포함) 및 시공, 환경보건, 공중보건, 전자공학개론, 유선공학개론

### 3 시험실시방법

-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: 선택형 필기시험
  -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4지택1형 20문항, 1문항 당 1분 기준
- 제3차 시험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  - 제1·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

### 4 학교장 추천서류 제출 (\*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구분모집 응시자만 해당)

가. 제출기간: 2018. 6. 26.(화) 09:00 ~ 6. 28.(목) 18:00

※ 방문제출의 경우 기간 중 점심시간(12:00~13:00)을 제외한 근무시간(09:00~18:00)에만 가능하며,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인 6. 28.(목)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

나. 제출방법: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처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

※ 반드시 학교에서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추천대상자 개별 제출은 불가함

다. 제출서류

- ◆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. [붙임 3, 4]
- ◆ 성적증명서 1부.
- ◆ 서약서 1부. [붙임 5] (\*응시자 본인 직접 작성)
- ◆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.
- ◆ 생활기록부 사본 1부.

라. 제출처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(서초동 391)

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(우 06756)

###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
| 응시원서 접수  | 필기시험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종합격자 발표일 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| 시험장소 공고일  | 시험일        | 합격자 발표일    | 시험장소 공고일    | 인성검사       | 면접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018. 8. 2.(목) ~ 8. 6.(월)<br>(취소마감일: 8. 9.(목) 18:00) | 9. 28.(금) | 10. 13.(토) | 11. 14.(수) | 11. 14.(수)  | 11. 24.(토) | 12. 17.(월)<br>~<br>12. 21.(금) | 12. 28.(금) |

-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hrd.seoul.go.kr>),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://gosi.seoul.go.kr>)에 공고함
-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구분모집의 경우, 학교장 추천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(인터넷 원서접수는 개인별 접수)
  - 학교장 추천서류 제출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함
-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(인성검사에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)
-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gosi.seoul.go.kr>)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,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
  -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: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간
  -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: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1개월간

## 6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- 가. 접수방법:**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gosi.seoul.go.kr>)에 회원가입 후 접수
- ※ '기술계 고졸(예정)자 구분모집의 경우,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전국의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(예정)자로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(6. 26. ~ 6. 28.)한 응시자만 접수 가능
- 나. 접수시간:** 접수기간 내 24시간(단, 시작일(8. 2.)은 09:00부터, 마감일(8. 6.)은 18:00까지)
- ※ 문의사항은 평일 09:00부터 18: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(12:00~13:00 점심시간 제외)
- 다. 응시수수료:** 7급 7,000원 / 8-9급 5,000원
- ※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·카드 결제·계좌이체 수수료)이 소요됨
 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(8. 6.)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(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)

## 라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(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)이 필요하며,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-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
-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선택과목, 사진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(단,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),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
- 접수 및 취소기간(8. 9.(목) 18시까지) 내 원서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
-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
-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
  - ※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[붙임 1]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기 바람

## 7 가산특전

### 가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함
  -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  - ※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  - ※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(1577-0606)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

**나. 의사상자 등 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**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
  - 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 34조의 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  - ※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  - ※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044-202-3258)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

**다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**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
-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,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(최대 2개). 단,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(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)

**1)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**

| 직 급  |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|   |
|------|---|---|
|      | 1%  | 0.5%  |
| 7급   |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<br>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<br>정보보안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|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<br>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<br>정보보안산업기사<br>워드프로세서(구 워드프로세서 1급)<br>컴퓨터활용능력 2급 |
| 8-9급 |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<br>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<br>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<br>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<br>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 | 정보기기운용기능사<br>정보처리기능사<br>워드프로세서(구 워드프로세서 1급)<br>컴퓨터활용능력 2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)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(수의, 선박항해, 의료기술, 약무, 간호, 지적, 운전직 제외)

| 구 분  | 9급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|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| 기능사 |
| 가산비율 | 5%                 | 3%  |

- ※ 보건 9급(고졸자) 모집단위의 임상심리사 1·2급 자격증 가산비율은 5%임
- ※ 기술직군의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[별표 6]에 따르며, [붙임 8]을 참조할 것
- 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

라. ‘가’항과 ‘나’항 모두 해당할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

마. 위의 <‘가’항 또는 ‘나’항>은 ‘다’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

바.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**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(10. 13.(토) 10:00 ~ 10. 16.(화) 18:00)**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gosi.seoul.go.kr>)에서 자격증의 종류(가산비율) 및 자격번호(보훈번호)를 입력하여야 함. **(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별도로 없음)**

- ※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
## 8 기타사항

-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구분모집의 경우, 학교장 추천서류를 공고된 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함
- 금번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한 10개 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함
-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-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
(단, 간호직은 시립병원 임용을 원칙으로 함)
-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·도,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(전출)를 금지함
-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- 필기시험에서 과락(각 과목의 40퍼센트 미만 득점)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 까지 공고함
- 이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[☎(02)3488-2321~8]으로 문의

### 【2019년 이후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안내】

- ◆ 2019년도부터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은 타 시·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한 일자에 실시할 예정임
- ◆ 2020년도부터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

| 현재  | 변경(2020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  |
|---|---|
|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|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, <u>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</u> |